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신고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정규근로자 평균 고용요건을 유지해야 함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상속증여-200, 2020.05.26

### 질 의

- '15년 부친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제조업, 개인사업자)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기준고용인원 계산방법과 고용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임 기준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35(2013.07.30.) 및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435, 2013.07.30.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05.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제과-244, 2020.05.22

### 질 의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 회 신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에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법령재산-23, 2020.05.21

### 질 의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에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

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자본거래-2350, 2020.06.10

### 질 의

- 질의인은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 A법인의 주식은 '20.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 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 질 의

-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